

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

[시행 2012. 8. 21.] [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-41호, 2012. 8. 20., 일부개정]



공정거래위원회(기업거래정책과), 044-200-4586

I.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

원사업자가 법 제13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,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%로 한다.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.

II. 재검토기한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2012-41호, 2012. 8. 20.>

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